

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16
----------	-----

제출년월일 : 2018. 0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2018. 1. 18.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평창군 지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

나. 지원 및 대상 등(안 제3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및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에 대해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
-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피해 지원이 곤란한 경우 국가 또는 강원도에 지원 요청

다. 지원범위 및 기준(안 제4조)

-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및 그 밖에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에 대해 지원 가능

라.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안 제6조)

-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은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재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
- 장기여행 또는 입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신고기간 연장 가능
-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 받거나 직접 조사
- 군수는 신고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

마. 간접지원의 정보 제공(안 제7조)

-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바. 지급방법(안 제8조)

-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 환수(안 제9조)

-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의 위반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아. 재원확보(안 제10조)

-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17. 11. 08. ~ 2017. 11.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은 평창군 지역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재난”이란 국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에서 법 제3조제1호 나목에 따른 피해 또는 마비(麻痺) 현상이 발생한 재난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대상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에 한정하되, 해당 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 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난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긴급하거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그 원인제공자(제5조에서 “원인자”라 한다)의 자력(資力) 부족 등으로 인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이 생활기반을 잃어버리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평창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평창군의 행정적·재정적 사정으로 재난에 대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강원도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대상자 및 신청기간·방법 등에 관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관할 구역 읍·면·이장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그 지역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및 기준) ① 재난구호 및 복구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의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피해수습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을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해당 지역의 피해상황, 군 및 국·도비 보조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이나 지원금 또는 원인자로부터 보험금 등을 지급 받았거나 받을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응하는 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 ① 군수는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재난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재난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장기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때
2. 그 밖에 군수가 해당자에게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그 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의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확인한 후 그 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간접지원의 정보제공) ① 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간접지원을 위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군수가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8조(지급방법) 생활안정지원 등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환수) 군수는 생활안정지원 등에 따른 지원금이나 물품을 지급받은 재난피해자가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지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10조(재원 확보) 군수는 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 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구호, 지원금 또는 물품의 지급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성명	생년월일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KT []SKT []LGU+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업피해(휴업 [] / 폐업 [] / 실직 [])				
	확정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허가·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응자신청 여부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계법령 발취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현 행	개 정
<p>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 <u>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u></p>	<p>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u>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개정 시행일 : '18. 1.18)</p>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6., 2014.12.30.>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2.30.>

③ ~ ⑤ 생략 [전문개정 2010.6.8.]

2.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1.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1)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지원

1)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2)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

라.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

마.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

2. 간접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농업인·어업인·임업인 및 염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

나.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라. 주택 복구자금의 융자

마.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3. 피해수습지원: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가. 공공시설의 복구

나.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

다.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

라.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등의 추모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 ①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필요한 국고와 지방비는 해당 사업에 드는 실제 비용과 피해금액 등을 기초로 별표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 기준을 확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가.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군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나. 제10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강원도에서는 최근 10년간(2006~2015년) 5개분야의 사회재난이 발생하였음.

- 1) 고속철도 대형사고(일반철도 포함) : 2014년 발생, 재산피해 42억원
- 2) 가축질병(구제역 및 AI)
 - 2010년 : 피해농가 수 33가구, 가축피해 419,081마리, 재산피해 2,268억원
【75개 시군구 발생】
 - 2015년 : 피해농가수 14가구, 가축피해 19,181마리, 재산피해 44억원
【강원, 경북, 경기, 충북, 충남 발생】

- 3) 감염병(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 2009년(신종인플루엔자) : 31,124명 발생, 12명 사망 【전국 시군구 발생】
 - 2010년(신종인플루엔자) : 868명 발생, 4명 사망 【전국 시군구 발생】
 - 2015년(메르스) : 5명 발생, 0명 사망 【전국 시군구 발생】

- 4) 보건의료(의사 집단휴진) : 2014년 발생,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없음 【전국 시도 발생】

- 5) 육상화물운송분야(화물운송 집단거부)
 - 2008년 : 수출 및 선적 차질 피해 65,974억원(전국 재산피해) 【전국 시군구 발생】
 - 2012년 : 수출 및 선적 차질 피해 2,460억원(전국 재산피해) 【전국 시군구 발생】

다. 최근 10년간 강원도 및 평창군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은 그 유형이 다양하고 재난별로 피해규모가 다르게 발생하였으며 연도별로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상이하고, 재난의 예측이 어려운 점 등 발생재난에 대한 지원예산 비용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연락처	(033) 330 -2406